

외국계은행에 대한 인민폐 영업 추가 허용

최근 중국은 5개 외국계은행에 대한 인민폐 영업을 추가로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국 내에서 인민폐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계은행은 모두 25개로 늘어났다. 특히 금번 추가로 인민폐 영업인가를 받은 외국계은행 중에는 우리나라의 산업은행과 한빛은행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외국계은행이 인민폐 영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가를 받기만 하면 국제적으로 상당한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존에 인민폐 영업인가를 받은 외국계은행 모두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은행들이다.

중국, 외국계은행에 대한 인민폐 영업 점진적 개방

WTO 가입을 앞두고 실시된 금번 조치는 중국의 단계적인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함께 자국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관여를 줄여 상호 건전한 경쟁을 유도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외국계은행에 대한 인민폐 영업 개방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외국계은행의 참여 확대, ② 영업가능 지역 확대, 그리고 ③ 영업조건의 개선이 바로 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 참여 확대이다. 1996년 12월 중앙은행인 中國人民銀行은 미국 시티은행을 포함하여 4개 은행에 대해 인민폐 영업을 처음으로 허용하였다. 이는 자국통화인 인민폐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금융시장의 점진적 대외개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인민폐영업이 가능한 외국계은행 수는 매년 늘어나 1997년 5개, 1998년 10개, 1999년 1개 은행이 추가되었고, 올해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등을 비롯한 5개 은행이 추가됨으로써 모두 25개 은행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 인민폐 영업을 추가로 허용된 5개 은행 가운데에는 산업은행과 한빛은행이 포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국 진출 기업들도 이제 현지에서 인민폐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민폐 영업가능 지역의 점진적 확대이다. 1996년 말 외국계은행에 대하여 인민폐 영업을 허가할 당시에는 영업가능 지역이 상하이(上海)내 푸동(浦東)지역으로 제한되었다. 1998년에는 중국 내 5대 경제특구가운데 하나인 선전(深圳)이 추가되었다. 선전으로의 외국계은행에 대한 인민폐 영업 허가는 향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¹⁾.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기존의 상하이와 선전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계은행들에 한해 상하이 허가 외국계은행들은 그 인근 지역인 장수(江蘇)성과 저장(浙江)성에서까지, 그리고 선전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계은행들은 광둥(廣東)성, 후난(湖南)성, 광시(廣西)자치구 등지에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지역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인민폐 영업가능 범위가 상하이와 선전에서 그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지만 아직까지 상하이와 선전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들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타지역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한 외국계은행들은 원칙적으로 인민폐 영업을 불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광둥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외국계은행으로부터 인민폐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서는 선전 경제특구에서 인민폐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계은행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지역간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가 원활하지 못해 결국 상하이와 선전 이외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인민폐 자금을 차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추가개방을 통하여 상하이와 선전 이외의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은행들에 대해서도 인민폐 영업을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개방지역 확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조건의 점진적 개선이다. 그 동안 중국인민은행은 자국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 우려 및 중국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 유도 측면에서 이들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 허가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었다. 우선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3년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인민폐 영업허가 신청 직전 2년 연속 흑자 유지 등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설사 영업을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계기업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외화 총 부채의 35% 미만으로 하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두어 사실상 인민폐 영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1)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에 관한 근거법규는 상하이 지역의 경우 ‘上海浦東外資金融機構經營人民幣營業試驗暫行管理辦法(Provisional Procedures for Administration of Pilot Trial of RMB Business by Foreign Funded Financial Institutions in Pudong Shanghai, 1996.12)’이며, 선전 지역의 경우 ‘深圳外資金融機構試辦人民幣業務原則指引(Principal Guides on Trial of Foreign Banks to Conduct RMB Business in Shenzhen, 1998.8)’임.

는 거의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한 규정으로 인민폐 영업을 허가 받은 외국계은행들의 영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자²⁾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은행간 시장을 통한 콜자금 운용 허용, 외화 부채 가운데 인민폐 부채의 비중 확대(35%→50%) 등의 인민폐 영업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표> 참조).

2) 1998년 6월말 당시 상하이에서 인민폐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총 대출과 예금은 각각 603백만 元(약 72.6백만 달러), 763억 元(약 91.9백만 달러)로 동 지역 내 중국자본은행의 대출과 예금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음. 이는 중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진출 외국계은행의 총 외화대출과 예금이 전체의 5.5%(273억 달러), 23.7%(481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민폐 영업을 허용된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중국 내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 관련 정책 변화 내용

시기	영업허용 은행	영업조건
1996.12	- Citibank(미국) - HongKong-Shanghai Banking Corp (영국) - Bank of Tokyo-Mitsubishi(일본) - Industrial Bank of Japan(일본)	- 영업허가조건 · 중국에서 3년 이상 영업 실적 · 허가 직전 2년 연속 흑자 유지 · 월평균 대출잔액이 1억 달러 이상(단, 외국계은행 지점일 경우 1.5억 달러 이상) · 월평균 대출잔액이 월평균 외화자산 잔액의 50% 이상 - 영업 제한 내용 · 인민폐 예대업무는 외국계기업에 한정 · 인민폐 대출은 인민폐 예금의 82% 및 총 외화대출금의 35%로 제한 - 영업가능 지역 : 상하이 푸둥지구
1997.1	- Sanwa Bank(일본)	
1997.4	- Standard Chartered Bank(미국) - Dai-ichi Kangyo Bank(일본), - Bank Indosuez(프랑스), - International Bank of Paris(프랑스)	
1998.9	- Bank of East Asia(홍콩) - Overseas Chinese Banking Corp. (싱가포르) - Development Bank(싱가포르) - Bank of America(미국) - Dresdner Bank AG(독일) - Credit Lyonnais(프랑스) - Sumitomo Bank (일본) - Sakura Bank(일본) - Credit Swiss First Boston(스위스) - ABN-Amero Bank(네델란드)	- 영업제한 내용 완화 · 은행간시장을 통한 콜차입 허용(최대 1억 위안) · 인민폐 표시 CD 발행 허용 · 총외화대출 가운데 인민폐 대출 비중 확대(35%→50%) · 중국계은행과의 신디케이트를 통한 중국기업에 인민폐 대출 허용 - 영업대상 지역 확대 : 선전 추가 (다만, 선전 지역에는 6개 은행만 허용)
1999.8		- 영업대상 지역 확대 · 상하이 허가은행 : 장수, 저장 · 선전 허가은행 : 광둥, 후난, 광시
1999.3	- New York Bank(미국)	
2000.3	- Korea Development Bank(한국) - Hanvit Bank(한국) - Asahi Bank(일본) - Komerz Bank(독일) - ANZ Bank(뉴질랜드)	
합계	25개	

자료 :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필자 작성

산업은행, 한빛은행의 인민폐 영업 허용으로 對中 진출기업의 자금난 완화 기대

금번 중국 금융당국의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한 인민폐 영업 허용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상하이에 진출해있는 두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국 내에서의 인민폐 영업은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따라서 인민폐 영업은 일부 선진국 은행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인민폐 영업 허용은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소득은 현지금융 차입이 어려웠던 중국 진출 국내기업들에게 인민폐 운영자금의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자금조달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주로 달러화 차입에 의존하던 많은 이들로서는 인민폐 차입은 위안화 평가절하 우려에 따른 환리스크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처럼 이들의 영업가능 지역이 여전히 상하이와 선전에 국한될 것이어서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對중국 진출기업의 상당수가 산둥(山東), 텐진(天津) 및 동북3성(遼寧, 吉林, 黑龍江)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상하이와 선전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두 개 금융기관의 인민폐 조달 여력이 작기 때문에 대출규모도 당분간은 소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지역이 더욱 확대되고 외국계은행들의 인민폐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면 중국 진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민폐 차입 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금융·자본시장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 필요

사실 금번 중국의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에 대한 추가 개방은 지난 11월 미국과의 WTO 가입 협상 타결에 따른 결과이다. 당시 중국은 WTO 가입 2년 내 기업 대상, 5년 내 개인 대상 인민폐 예대업무를 승인하는 한편, 5년내 지역 제한규정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금융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외국계은행에 대한 추가 인민폐营业을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과 맞물려 채권 및 주식 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의 개방 및 진입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들은 지금까지는 모기업으로부터의 자본 출자 혹은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계은행이나 증시 상장 혹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직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기업 가운데 중국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없지만 최근 일부 기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중국의 자본시장 관련 제반 제도 및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방침과 최근 중국 경제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기능이 강화되면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은 한층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비교적 양호한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 母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금조달의 다양화에 따른 리스크 경감차원에서 중국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全善俊】